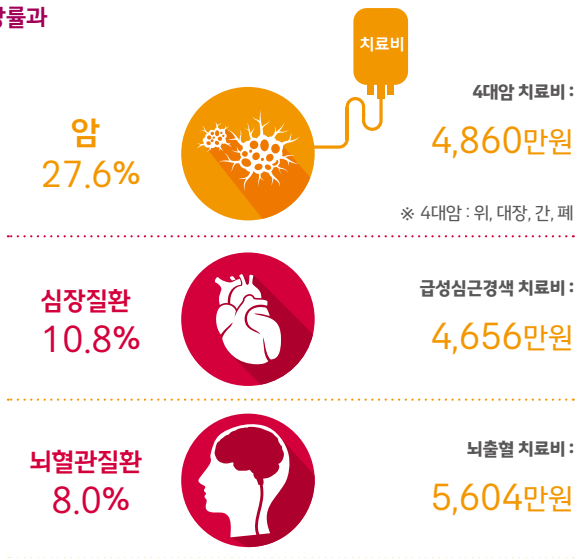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 II

보장성 상품



질병 사망률과
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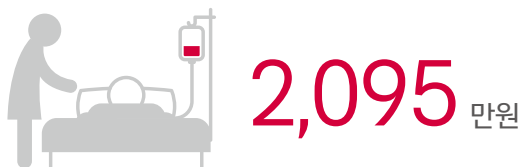
[출처] 사망원인: <2017 사망원인통계결과>, 통계청, 2018
치료비: <평균치료비>(다빈도 질병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간병비: 1일 10만원을 가정하여 평균입원일수를 곱하여 산정
생활비: 매월 100만원, 3년 발생을 가정하여 산정

우리나라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



[출처] <추정치매유병률(65세 이상)>, 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환자 보살핌
연간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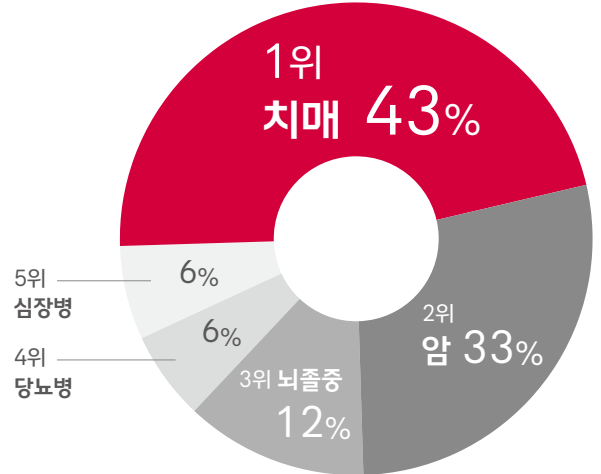


[출처]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 중앙치매센터, 2019

치매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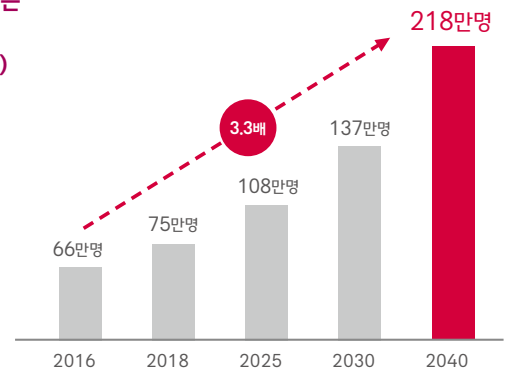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 노인의 기준 : 만 60~69세



[출처] <2014년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 중앙치매센터, 2014

급격하게 증가하는
치매환자수
(65세 이상 인구)



[출처] <전국 치매역학조사>, 중앙치매센터, 2018

치매환자 첫 증상 후
평균 생존기간



[출처]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추적 조사>, 삼성서울병원 2013

보험료 변동없는 비갱신 건강보험!(단, 갱신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 변동가능) 다양한 특약으로 실속있게 골라담는 맞춤 설계!(2형/3형에 한함)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상품특징

만15~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보험료 변동없이 90세까지 보장**(2형/3형에 한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형 가입 시 중증치매까지 보장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시
진단급여금의 50%만 지급, 중증치매의 경우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생존시,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생활자금 지급(특약 가입시)**
(5년마다 갱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각종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및 수술, 사망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하나로 종합 보장!**

가입안내

상품형태 부가가능특약

1형(만기환급형), 2형(순수보장형), 3형(치매추가형)
(무) 실속 하나로 재해사망특약,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무) 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무)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 (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 신 질병입원특약II(갱신형), (무) 신 재해입원특약II(갱신형), (무) 신 암진단특약IV(갱신형), (무) 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 신 암사망특약(갱신형), (무) 재해골절특약 II (갱신형),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 고도장해특약,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형(만기환급형)	2형(순수보장형)	3형 (치매추가형)	
80세만기	10년납	만 15세~52세	만 15세~70세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5년납	만 15세~52세	만 15세~65세		
	20년납	만 15세~51세	만 15세~60세		
	60세납	만 15세~52세	만 15세~55세		
	70세납	만 15세~52세	만 15세~65세		
	80세납	만 15세~45세	만 15세~70세		
90세만기	10년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15년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20년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60세납		만 15세~55세	만 15세~55세	
	70세납		만 15세~65세	만 15세~65세	
	80세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90세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계약의 보험기간을 90세만기로 하더라도 부가되는 특약은 80세만기만 제공됩니다.
(단,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90세만기까지 제공됩니다. **또한,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은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갱신됩니다.**)
-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90세만기여야 하고 40세 이상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특약 별도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2형(순수보장형), 3형(치매추가형)의 경우 만기 시 지급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400구좌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미만 2,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이후 4,000만원
뇌출혈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미만 2,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이후 4,000만원
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3형(치매추가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미만 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이후 2,000만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 한하여 지급)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重症)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重症)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다만, “중증(重症)치매상태”의 경우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다만, 3형(치매추가형)에 한함)로 진단확정되거나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기간 만료시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 장애분류표 및 장애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특약 보장내용

기준 : (무) 실속 하나로 재해사망특약 300구좌,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6구좌,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10구좌, (무) 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20구좌,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200구좌, (무)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 1억원, (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 신 질병입원특약II(갱신형) 10구좌, (무) 신 재해입원특약III(갱신형) 10구좌, (무) 신 암진단특약IV(갱신형) 400구좌, (무) 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무) 신 암사망특약(갱신형) 30구좌, (무) 재해골절특약 II (갱신형) 30구좌,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00구좌, (무) 고도장해특약 20구좌, (무) 안심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급부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 실속 하나로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6,000만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중대한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0만원
	만기환급금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재해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20만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뇌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뇌경색증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00만원
(무) 신 질병입원특약II (갱신형)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0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만원
(무) 신 재해입원특약III (갱신형)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 신 암진단특약IV (갱신형)	일반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0만원
	특정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4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800만원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갑상선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제자리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400만원
(무) 신 고액암특약 (갱신형)	고액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고액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5,000만원
(무) 신 암사망특약 (갱신형)	암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3,000만원
(무) 재해골절특약 II (갱신형)	재해골절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사고발생 1회당 지급)	30만원

급부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2대질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0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우) 고도장해특약	고도장해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우) 안심 치매진단특약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우)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4,000만원
(우)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충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충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충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 주계약을 90세 만기로 가입한 경우라도,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80세만 가입입니다. 상품가입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 안심 치매진단특약, (우)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우)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90세만 가입입니다. **또한,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은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갱신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연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기간 만료시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단,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
- (우)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항공기, 지하철/전철, 기차, 버스(전세버스 및 셔틀버스 제외), 택시(랜터카 제외), 여객선)
- (우)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광상동맥(심장동맥)외회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 췌장)을 말합니다.
- (우)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의 경우,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우)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우)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 뇌경색중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우) 신 질병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우) 신 재해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우) 재해골절특약 II (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우) 신 암진단특약IV(갱신형)에서 “일반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장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우) 신 고액암특약(갱신형)에서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우) 신 고액암특약(갱신형), (우) 신 암사망특약(갱신형)은 (우) 신 암진단특약IV(갱신형)을 동시에 부가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55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우)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대질병생활자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질병에 해당하는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 고도장해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우)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경도 이상의 치매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우) 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우) 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우) 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우)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우) 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라 함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갱신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갱신형 특약에 한함)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무) 신암진단특약Ⅳ(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반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 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보험금이 지급된 “일반암, 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 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 뇌경색중진단특약(갱신형) 및 (무) 2대질환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무) 2대질환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경우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갱신되는 특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취)로 안내하여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주계약 400구좌 [80세만기(주계약 2형, 3형의 경우 90세만기), 20년납, 월납 / 단위 : 원]

연령	주계약 1형(만기환급형)		주계약 2형(순수보장형)		3형 (치매추가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5세	46,000	31,200	33,600	24,000	46,400	33,200
30세	58,800	39,200	38,000	26,800	52,400	37,600
35세	77,200	51,600	42,400	30,000	59,200	42,800
40세	108,000	72,800	46,800	33,600	66,000	48,000
45세	174,000	115,600	51,200	37,200	73,600	54,000
50세	450,800	272,400	55,600	40,800	81,600	60,400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주계약 400구좌, [남자 40세, 80세만기(주계약 2형, 3형의 경우 90세만기), 20년납, 월납 / 단위 : 원]

종류 납입기간	주계약 1형(만기환급형)			주계약 2형(순수보장형)			3형 (치매추가형)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324,000	0	0.0%	140,400	0	0.0%	198,000	0	0.0%
6개월	648,000	0	0.0%	280,800	0	0.0%	396,000	0	0.0%
9개월	972,000	0	0.0%	421,200	0	0.0%	594,000	0	0.0%
1년	1,296,000	0	0.0%	561,600	0	0.0%	792,000	0	0.0%
3년	3,888,000	1,931,200	49.6%	1,684,800	702,400	41.6%	2,376,000	1,088,800	45.8%
5년	6,480,000	3,948,400	60.9%	2,808,000	1,525,600	54.3%	3,960,000	2,288,800	57.7%
7년	9,072,000	6,038,400	66.5%	3,931,200	2,368,000	60.2%	5,544,000	3,523,600	63.5%
10년	12,960,000	8,885,600	68.5%	5,616,000	3,430,800	61.0%	7,920,000	5,140,800	64.9%
15년	19,440,000	13,974,000	71.8%	8,424,000	5,248,800	62.3%	11,880,000	7,962,400	67.0%
20년	25,920,000	19,474,800	75.1%	11,232,000	7,083,200	63.0%	15,840,000	10,897,600	68.7%
25년	25,920,000	21,216,800	81.8%	11,232,000	7,073,600	62.9%	15,840,000	11,376,800	71.8%
30년	25,920,000	23,041,600	88.8%	11,232,000	6,886,000	61.3%	15,840,000	11,726,400	74.0%
35년	25,920,000	24,663,200	95.1%	11,232,000	6,188,800	55.0%	15,840,000	11,564,000	73.0%
40년	25,920,000	25,920,000	100.0%	11,232,000	4,715,200	41.9%	15,840,000	10,349,600	65.3%
50년				11,232,000	0	0.0%	15,840,00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생존금부금 수령 전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으므로 각 해당 시점 생존금부금 수령 후에는, 상기 해지환급금에서 생존금부금이 차감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급성심근경색중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급성심근경색중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 됩니다. (2형(순수보장형에 한함))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종(표준형)의 비교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특약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동안 특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 4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40세, 월납 (단위:원)]

(1) 납입보험료 비교

연령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11,050	14,870	10,890	14,600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20,400	26,900	29,400	39,000
(무)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	17,720	23,360	18,440	24,280
합계 보험료	49,170	65,130	58,730	77,880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남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590,040	0	0.0%	781,560	0	0.0%
2년	1,180,080	0	0.0%	1,563,120	447,940	28.6%
3년	1,770,120	0	0.0%	2,344,680	1,094,240	46.6%
5년	2,950,200	0	0.0%	3,907,800	2,432,340	62.2%
10년	5,900,400	0	0.0%	7,815,600	5,728,940	73.3%
15년	8,850,600	0	0.0%	11,723,400	9,296,820	79.3%
19년	11,210,760	0	0.0%	14,849,640	12,589,740	84.7%
20년	11,800,800	13,481,420	114.2%	15,631,200	13,481,420	86.2%
25년	11,800,800	15,605,410	132.2%	15,631,200	15,605,410	99.8%
30년	11,800,800	18,137,130	153.6%	15,631,200	18,137,130	116.0%
40년	11,800,800	24,826,080	210.3%	15,631,200	24,826,080	158.8%

경과기간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704,760	0	0.0%	934,560	0	0.0%
2년	1,409,520	0	0.0%	1,869,120	601,630	32.1%
3년	2,114,280	0	0.0%	2,803,680	1,383,430	49.3%
5년	3,523,800	0	0.0%	4,672,800	3,001,000	64.2%
10년	7,047,600	0	0.0%	9,345,600	6,989,810	74.7%
15년	10,571,400	0	0.0%	14,018,400	11,246,500	80.2%
19년	13,390,440	0	0.0%	17,756,640	15,065,030	84.8%
20년	14,095,200	16,079,020	114.0%	18,691,200	16,079,020	86.0%
25년	14,095,200	18,114,860	128.5%	18,691,200	18,114,860	96.9%
30년	14,095,200	20,210,510	143.3%	18,691,200	20,210,510	108.1%
40년	14,095,200	22,483,230	159.5%	18,691,200	22,483,230	120.2%

- 상기 해지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치매 정의 및 진단확정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 치매 정의

구분	보장내용
"경도치매상태"의 정의	“경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1점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등도치매상태"의 정의	“중등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2점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보장제외**: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CDR척도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2) 치매 진단확정

구분	진단확정
경도치매상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예시]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CDR척도 기준 (임상치매평가척도)

구분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기억력	• 중증도의 기억장애 •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 심한 기억장애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함 •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 심한 기억장애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함 •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 부분적인 사실조차도 보통 잊어버림 • 난해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검사하기 힘든 경우가 잦음	• 의미 있는 기억 기능이 전혀 없음 •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지남력 (시간, 장소, 사람과 관련된 감각)	• 시간에 대한 중증도의 장애 • 사람과 장소에 대해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됨	•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되고 있음	•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때때로 반응함	•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증도의 장애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	•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 단순한 지시나 명령도 수행할 능력이 없음	•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사회활동	• 직장생활, 물건사기,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잘 할 수 있어 보임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견 상으로도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임	•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집안생활과 취미	• 집안생활에 가법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바둑 등)는 포기됨	• 아주 간단한 집안 일만 할 수 있고, 관심이나 흥미가 매우 제한됨	• 집안에서 의미 있는 기능 수행이 없음	• 어떠한 취미 활동이나 집안일에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위생 및 몸치장	•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 옷 입기, 개인위생, 개인 소지품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함	• 개인위생과 몸치장의 유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주 대소변의 실금이 있음	• 옷 입거나 식사를 하려는 시도는 있음 • 도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함 • 누워 지내는 상태임

[출처] 대한신경학회지, 2001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이며, 부가가 가능한 모든 특약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보험료적용이율은 이 보험 상품의 상품설명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통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이동전화·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부산 : (051)606~1700~1 / 대구 : (053)760-4000 / 광주 : (062)606-1616 / 대전 : (042)479-5120~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588-3311, (02)3786-7520/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 보험 범죄 신고
생명보험협회 서울 : (02)2262-6565 / 부산 : (051)669-7501 / 대구 : (053)427-8051 / 광주 : (062)350-0114 / 대전 : (042)242-7002 / 원주 : (033)761-9672 / 전주 : (063)252-5946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센터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년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ia.co.kr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